

2017년 10월 29일부터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

안전검사 대상

컨베이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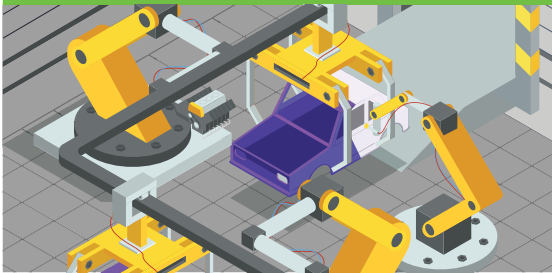


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·체인·롤러·트롤리·버킷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
※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

1. 소형 컨베이어
2.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
3.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
4.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
5. 타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
6.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것 또는 구간
7. 정상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
8. 최대 이송속도가 150mm/s 이하인 것
9.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 또는 구간

산업용 로봇



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※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

1. 소형로봇으로만 구성된 셀
2.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
3. 상·하·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
4. 도장공정 등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
5. 개구부가 없는 1.8m 이상의 방책으로 둘러 쌓인 셀
6.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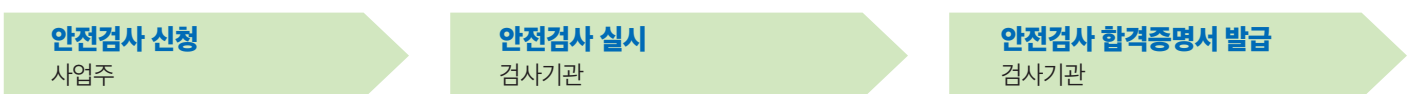
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

- ① 2017. 10. 28까지 설치·사용중인 설비 - 2018.12.31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- ② 2017. 10. 29이후 설치·사용하는 설비 -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

안전검사기관 및 홈페이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http://miis.kosha.or.kr (1544-3089)
대한산업안전협회	http://www.safety.or.kr (02-860-7180)
한국승강기안전공단	http://www.koelsa.or.kr (1566-1277)
한국안전기술협회	http://www.korsta.or.kr (1577-7514)

안전검사 업무처리 절차



법적근거	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6
제도소개	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
과태료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